

국제 리뷰

- 아랍에미리트(UAE) 젠더균형위원회(GBC)의 성주류화 정책검토를 위한 Fact-finding mission 참석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영국의 아동돌봄정책과 가정 내 돌봄 인력 관리 현황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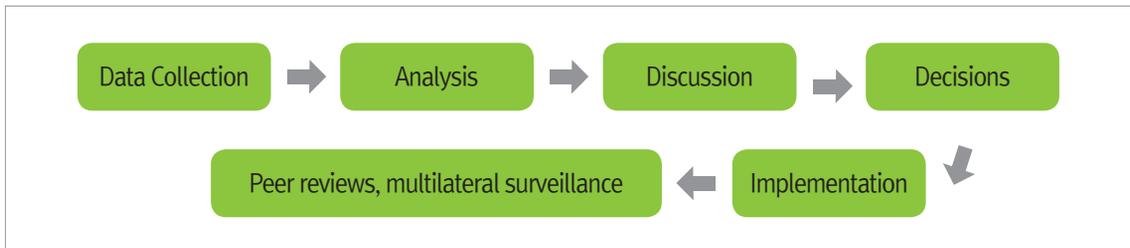
아랍에미레이트(UAE) 젠더균형위원회(GBC)의 성주류화 정책검토를 위한 Fact-finding mission 참석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Dubai)에서 진행된 OECD 주관 아랍에미레이트(UAE) 젠더균형위원회의 성 주류화 정책 검토를 위한 Fact-finding mission에 OECD 동료검토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정부의 요청에 의해, OECD 공공거버넌스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GOV]) 산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팀(Governance Reviews and Partnership Division)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회의의 목적은 UAE 젠더균형위원회가 2015년 말 신설되면서, 정부 등 공공분야에 젠더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해 OECD는 사실 확인을 위해 OECD 내 젠더 전문가팀과 OECD 회원국의 젠더 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의를 운영하였다. OECD 회원국으로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한국이 동료 국가로서 초청되었다. 전문가들의 역할은 UAE 정부 관료들과의 정책대화 참여, 자국의 우수 사례 공유, 젠더균형위원회(GBC) 문서 검토 및 자문 제공 등 이었다. 이번 Fact-finding mission에서는 UAE 정부부처 및 공기업, 국립대학교 등의 인사관리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정책에 대한 사실 확인 뿐 아니라 담당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파악할 수 있었다.

OECD Peer Review 절차는 OECD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내부 토론을 거쳐 검토할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단계에서 동료검토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찰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www.oecd.org/about/whatwedoandhow>

[그림 1] OECD 동료검토 회의 결정과정

이번 UAE 동료검토는 젠더정책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었으며, UAE 공무원들은 OECD Peer 사례로 한국의 사례를 듣기 원하였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UAE의 보수적 정치문화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사례가 UAE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미션의 최종결과물은 UAE를 포함한 Middle East 지역에 대한 공공분야 젠더균형을 위한 가이드 북의 형태로 2017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UAE의 여성 취업률(49%)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UAE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국적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UAE 출신, 소위 말해 자국 여성의 취업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여성들을 위한 출산 휴가가 45일에서 60일(다국적 기업과 아부다비 주정부의 경우 90일)까지 늘어났고, 남성 역시 3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게 남아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 역시 이러한 성역할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남녀 정년퇴직 연령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남성은 30년 근속에 65세까지, 여성은 25년 근속에 50세까지로, 이 부분에서는 확연한 성차별이 나타났다.

UAE 학계에서는 ‘여성/젠더’ 용어가 들어간 교과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New York University의 두바이 캠퍼스처럼 외국대학의 경우 ‘Women and Work in Gulf’ 정도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학’을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Zayed 대학에서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는 한 여자 교수의 경우에도 ‘여성’이 들어간 과목 개설에 대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일반 과목을 가르치면서 충분히 성평등에 대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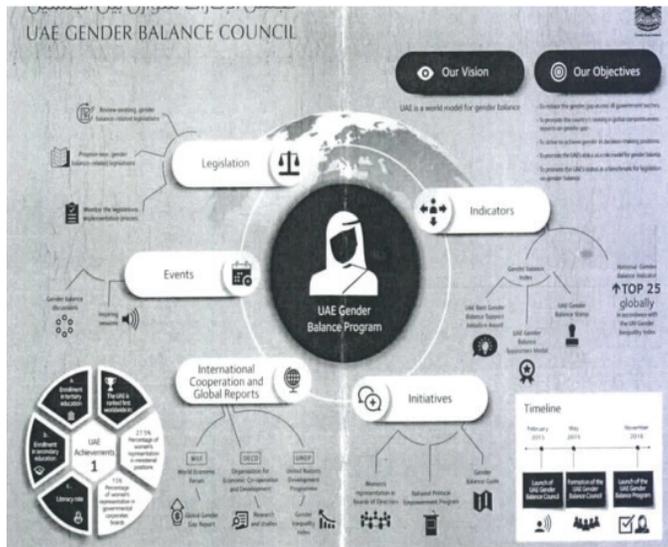
정부 연구소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에 소속된 한 교수는, 여성학을 전공했고, UAE에서 여성학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보이고 있었다. Harvard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리더십, 여성정책같은 과정이 전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여성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몇 년째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학계의 상황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여성관련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UAE 여성들의 삶은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사실상 없으며, 일부다처제가 상위 계층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신, 이혼할 경우, 여성에게는 머물 수 있는 집과 생활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는 등 철저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왜 UAE 여성들이 일하지 않는가 하는 연구가 최근 수행되었는데, 결국 UAE 자국 여성들은 가족들로부터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에게 일을 하라는 압력이 없으며, 심지어 대학 졸업 후 몇 년의 기간 동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해서 일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게 되어 차라리 일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 또한 30대-50대 여성 중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지만, 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의 경우,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인 재택근무나 가내수공업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UAE 정부에서는 UAE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관건이라 생각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에 주력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인데, 많은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보모를 두고 있는 문화이지만, 좀더 양질의 양육을 위해 어린이집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 정부에서는 2015년 젠더균형위원회(Gender Balance Council)를 신설하여, 활동사항을 총리실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 성과지표(KPI)로 젠더 지표를 범분야 이슈로 추가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들은 그러나, 회의가 진행 중인 당시 시점에서 이 젠더 KPI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젠더균형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젠더균형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외교부, 재정부, 고용부를 대상으로 젠더지표의 성과를 높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UAE 정부는 UNDP 등의 국제적 성평등 지수가 자국의 성평등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성평등 지수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은 젠더균형위원회가 제작한 브로셔인데, 영역별로 젠더지표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활동방향과 목표를 볼 수 있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해당 지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스탬프를 부여하는 방식, 민간 기업에는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아래 사진 중 오른쪽 중간 그림 참고).



출처: UAE 젠더균형위원회(2016), 홍보자료.

[그림 2] UAE 젠더균형위원회의 비전 · 목표 · 추진체계

젠더균형위원회(GBC)에서는 이같은 브로셔를 제작하고 활동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GBC의 비전은 젠더균형의 세계 모델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정부 부문에 걸친 젠더 갭을 줄이고 젠더 갭과 관련한 국제적 경쟁력의 순위를 높이고, 의사결정직에 여성을 늘리고, 젠더균형에 대한 법률안에 있어서도 모델사례로 UAE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현재 UAE 정부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실천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의 기간 중 면담에 참여한 많은 남성 고위공무원은 물론 여성 공무원들은 젠더균형위원회의 조직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면담자들이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뚜렷하여, OECD 젠더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미션이 중동지역의 성차별적 문화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종결과물이 배포된 이후, 공공분야에서만은 어느 정도의 젠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여성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인식을 함께하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참 · 고 · 문 · 헌

OECD(2014), Women in Public Life, Gender, law and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OECD Governance Programme.

____ (2016), United Arab Emirates, Fact Sheet.

____ (2016), 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____ (ND), Report on Gender Public Polici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Part 1: Legal Assessment and Conformity Review

Part 2: Gender Strategy and Public Policy Assessment

영국의 아동돌봄정책과 가정 내 돌봄 인력 관리 현황¹⁾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영국은 시설 중심의 공공 돌봄서비스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의 아동돌봄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아동돌봄/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아동돌봄정책의 방향과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요건과 등록 기준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영국의 아동돌봄정책 현황 : 보다 나은 아동돌봄(More Great Childcare)²⁾

현재 영국의 보수-자유민주연합 정부(2010-2015)는 아동돌봄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아동돌봄(More Great Childcare)' 정책을 2013년 발표했다. 이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보다 나은 아동돌봄'정책은 ① 부모의 직장 복귀,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장기적으로는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 ② 일-가족 양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배경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영국 정부는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해 ① 서비스제공자들의 지위와 품질 향상, ② 양질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더 많은 자유 허용, ③ 규제 제도 개선, ④ 부모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 부여를 주요하게 추진한다.

다음에서는 각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이 글은 2016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전략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김소영 외)에서 발췌해 보완 작성되었음. 앞의 연구 보고서 내용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저자가 영국의 Department for Education(교육부),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OFSTED), Council for Awards in Care, Health and Education 등 아동돌봄정책·서비스 관련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2) 해당 내용은 영국 교육부 관계자 면담과 Department for Education(2013)의 "More great childcare-Raising quality and giving parents more choice"(p.6-12), <https://www.gov.uk/help-with-childcare-costs/free-childcare-and-education-for-2-to-4-year-olds>(검색일:2016.12.20.)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가. 서비스제공자들의 지위와 품질 향상 : 영유아기 돌봄 인력의 진입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영국 정부는 아동돌봄서비스 인력 중 특히 영유아기(Early Years) 돌봄 인력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 영유아 돌봄과 교육(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의 품질은 제공인력의 품질(자격요건 등)이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관련 인력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기초역량 등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영유아기 돌봄서비스 자격 요건의 개선 계획을 추진하며, 진입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품질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해 '영유아기 돌봄자(Early Years Educator)'의 경우 3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하며, GCSE 영어와 수학 과정에서 최소 C학점 이상을 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나. 양질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더 많은 자유 허용 :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돌봄 아동 수 의무규정 유연 적용

영국 정부는 저임금 구조로 인한 '관찮은'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nursery)과 가정보육사(childminder) 등 양질의 자격을 갖춘 서비스제공자에게 돌봄 아동 수 의무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가 수당 등 소득 개선의 지원을 계획하였다.

현행 규정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사의 경우 최대 6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데, 영유아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엄격해 5세 미만 유아는 최대 3명, 1세 미만 영아는 단 1명을 돌보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 부모가 다소 늦게 자녀를 데리러 오거나 가정보육사가 단기간 추가 아동을 돌보게 될 경우 규정의 위반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쌍둥이를 한 명의 가정보육사에게 맡길 경우 가정보육사 1명당 1세 미만 영아 1명이라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예외적 처리를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 중복 돌봄으로 인한 규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 아동의 총 수 기준은 유지하되, 위와 같은 상황에서 5세 미만 유아를 3명에서 4명으로, 1세 미만 영아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규제 제도 개선 :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중심의 규정으로 개선, 교육기준청의 검증된 체계로 서비스 점검 일원화

영국 정부는 보다 나은 돌봄 제공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점검 제도로 서비스제공자들이 과정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부모에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현행 규정에서 불필요한 규정(예: 아동 한 명당 바닥면적)을 아동 복지와 안전 요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정책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교육기준청(OFSTED)과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교육기준청으로 서비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준청의 영유아 돌봄자의 점검을 개혁해 취약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점검을 보다 자주하며, 점검 후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제공자들이

유료 재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부모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 부여 : 부모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선택 지원

영국의 경우 양질의 보육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낙후 지역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교육기준청 평가에 따르면 보육시설(nursery)이나 가정보육사 중 10%정도만이 우수 등급으로 공인되었고, 저소득층 지역 가정보육사 중 39%는 '양호' 또는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 부모에게 가정 내 돌봄(childminding)은 가장 실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주로 자영업 등 영리 사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사들의 경우 사업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그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부모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 선택 폭도 축소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가정보육사중개기관(childminder agency)을 설립해 가정보육사의 사업체 설립 과정, 필요한 교육 서비스 제공, 가정보육사와 부모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 재정 지원으로 3-4세 모든 유아에게는 연간 570시간, 주 15시간 돌봄/조기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2013년에는 주 15시간 돌봄/조기교육 무료 이용에 대한 권한이 2세 영아로 확대되었다. 2세 영아의 경우 부모가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수당(JSA), 소득과 연동된 고용과 지원 수당(ESA),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 등의 지원을 받거나 부모의 세전 연간소득이 16,190파운드 이하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대상의 경우 주당 30시간으로 돌봄 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하며, 부모 한 명의 소득이 1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휴직·법정 병가 중인 경우, 부모가 임시 시급 노동계약/등록된 자영업자인 경우, 부모 한 명이 고용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실질적 육아책임자/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2. 교육기준청(OFSTED)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 등록과 점검³⁾

교육부 산하 교육기준청(OFSTED)은 영유아 및 아동에게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의 등록심사와 등록된

3) 해당 내용은 교육기준청과 교육부 관계자 면담, OFSTED(2016b)의 "Ofsted the regulator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OFSTED(2016a), 「Early years and childcare registration handbook」(p.38-49), Department for Education(2014)의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인력의 관리를 담당한다.

영국의 아동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보는 곳, 돌보는 아이의 수 등에 따라 가정보육사(Childminder), 아동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Home-childcarer), 4명 이상의 돌봄 인력이 함께 돌보는 경우(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Childcare on non-domestic premises)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표 1〉 영국의 아동돌봄서비스 분류

용어	내용
Childminder	가정보육사(childminder)의 집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1명 이상 아동을 돌봄 등록된 경우 돌보는 시간의 최대 50%를 시설(예: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음
Home-childcarer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 '내니(nannies)' 또는 '오페어(au pair)' 로도 알려짐 한 집에서 두 가족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	4명 이상이 함께 돌보는 경우(예: 1명의 childminder와 3명의 보조인력, 4명의 childminder 등이 함께 돌봄) 돌보는 시간의 최대 50%를 시설(예: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음
Childcare on non-domestic premises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보통 낮 시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클럽 등에서 아동을 돌봄

자료: Ofsted(2016b). "Ofsted the regulator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Presentation slide 3.

가. 아동돌봄 제공자 등록 기준

교육기준청에 등록하는 인력은 영유아 돌봄자와 아동돌봄 제공자 등 크게 둘로 분류된다. 영유아 돌봄자는 영유아기초단계 이수가 주요 자격요건이다. 아동돌봄 제공자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의무등록(5-8세 아동)해야 하거나 자율등록(8세 이상)이 가능하며, 교육기준청의 15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2〉 영국 교육기준청의 아동돌봄 제공자의 등록 기준

등록	제공자	
영유아 돌봄 등록 (Early years register)	0-5세 아동 돌봄 제공자 아동의 복지나 안전, 발달과정 등과 관련한 자격을 충족시켜야 함	
아동돌봄 (Childcare)	의무등록 (register-compulsory part)	5-8세 아동 돌봄 제공자(Home childcarer 제외) 15개의 등록요건(registration requirement)을 모두 갖춰야 함
	자율등록 (register voluntary part)	8세 이상의 아동 돌봄 제공자(Home childcarers) 등록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15개의 등록요건(registration requirement) 갖춰야 함.

자료: Ofsted(2016b). "Ofsted the regulator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Presentation slide 7.

영유아 돌봄자의 경우 학습과 발달, 아동 보호와 복지 등과 관련한 자격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영유아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⁴⁾는 모든 영유아 돌봄/담당자(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담당하는 자, 교육기준청에 영유아 돌봄을 등록한 자, 가정보육사중개기관에 영유아 돌봄을 등록한 자)들이 아동의 학습 및 발달,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학습 및 발달을 위한 요건’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동돌봄법(Childcare Act 2006)의 ‘39절 영유아기초단계’에 관한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요건(early years learn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돌봄 대상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돌봄자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 된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과 관련한 사항은 의사소통과 언어, 신체 발달, 인성/사회성/감성 발달 등 3개 핵심 영역과 핵심 영역을 강화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요건(safeguarding and welfare requirements)’은 중개기관에 등록된 가정 보육사를 포함한 서비스제공자들이 아동의 안전 유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취해야할 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는 해당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LSCB)의 지침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준청과 가정보육사중개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이력조회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교육기준청이나 가정보육사중개기관에 등록을 원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영유아기초단계에 대한 이해, 수행을 돕는 훈련 수료 및 응급처치자격증 소지 등이 요구된다.

한편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가정보육사 등)의 등록요건은 15개로 분류되며,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5개 등록요건에는 아동의 안전보장, 아동보호에 대한 준비, 아동돌봄 또는 아동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의 적합성, 자격증과 교육훈련, 장소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성, 돌봄 제공 준비,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 기록, 부모에게 정보 제공, 교육기준청에 정보 제공, 장소와 제공(provision)의 변화, 인력 변화,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보험, 등록 인증 등이 포함된다. 각 요건은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는데,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사항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또한 자율등록자에 비해 의무등록자의 등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두고 있다.

교육기준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등록정보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며, 심사자들은 지원한 인력의 능력, 전문성 등을 체크하고, 등록요건을 점검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 때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4) 이하 영유아기초단계(EYFS)의 세부 요건에 관한 내용은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p.7-10, 16-32)를 바탕으로 구성함.

나. 등록된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후점검

아동돌봄법(Childcare Act 2006) 49/50조항에 근거해 등록된 영유아 돌봄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처음 등록한 경우에는 36개월(3년)에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기준청에서는 통상 하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아동의 학습과 놀이에 대한 관찰, 개별 아동의 발달경로 등을 체크한다. 또한 아동/ 부모/직원/리더 등과의 면담을 실시한다.

교육기준청은 점검 결과에 대해 구두 피드백과 보고서를 동시에 제공하는데,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려준다. 기준 미달인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유예기간을 주지만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시킨다.

참 · 고 · 문 · 헌

- 김소영 · 최인희 · 김영란(2016).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More great childcare-Raising quality and giving parents more choice” .
-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 Ofsted(2016a). 「Early years and childcare registration handbook」.
- Ofsted(2016b). “Ofsted the regulator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 [http://www.cache.org.uk/Qualifications/CYP/CYPL3/Pages/CACHE-Level-3-Award-in-Preparing-to-Work-in-Home-Based-Childcare-\(QCF\).aspx](http://www.cache.org.uk/Qualifications/CYP/CYPL3/Pages/CACHE-Level-3-Award-in-Preparing-to-Work-in-Home-Based-Childcare-(QCF).aspx)(검색일: 2016.12.20.).
- <https://www.gov.uk/help-with-childcare-costs/free-childcare-and-education-for-2-to-4-year-olds>(검색일: 2016.12.20.).